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안내

1. 근거

가. 학칙 제49조의2(학사학위 취득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111조의2(학사학위 취득유예)

2. 내용

가. 졸업학점 및 졸업논문(시험), 중원졸업인증제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공인전문능력과정 자격취득,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구분	졸업학점	졸업논문(시험) 등	중원졸업인증제	비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가능	**이수**	**합격**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불가	이수	합격 or 불합격	이수 or 미이수	수료
	미이수	합격 or 불합격	이수 or 미이수	졸업 불가

나.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최대 2년(1년마다 신청하여야 함)

3. 신청대상자: 2025년 전기(2월) 졸업예정자

4. 절차

구분	절차	참고사항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및 기간 연장신청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서명→ 학과(부)장 확인, 서명→ 소속 단과대학 통합행정팀으로 제출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1년마다 신청해야함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중 졸업	'학사학위 취득신청서' 작성→ 학과(부)장 확인, 서명 → 소속 단과대학 통합행정팀으로 제출	졸업 시기는 2월(전기) 또는 8월(후기)에 한함

5. 주의사항

가. 8학기를 이수한 학생 중 졸업학점 부족 시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학기를 연장하여 초과 학기자로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나.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및 중원졸업인증제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경우 수료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불가

다.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은 1년간 유효하고, 최대 2년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후 재신청하여야 함

라.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2년 경과 후에는 학사학위 취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졸업대상자로 분류함

마.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는 조기졸업 불가
바.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사.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생은 별도의 수강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아.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생이 교과목 이수 희망 시 수강 신청 및 학점 단위 등록 필수
자.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생의 졸업예정증명서는 매 학기 단위로 발급 가능

6. 학사학위 취득유예자 혜택

가. 학적은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재적생 신분 유지
나. 도서관, 각 센터, 학생 식당 등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다. 희망 시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가능

7. 제출 장소: 단과대학 통합행정팀<☎ 043-830-[내선번호]>

단과대학	학과	내선번호	사무실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소방안전학과	8328	M1 601
	경호학과, 국가안보학과, 소방안전학과, 연극영화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법무법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8325	
	사회복지학과, 디자인학과	8586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8552	M2 704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의생명과학과), 융합바이오학과(식품제약학과, 뷰티케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의료공학과	8553	
	운동레저학부, 골프과학과, 말산업학과, 생활체육학과, 축구학과	8554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8677/8678 /8621	I 321
	뷰티메디컬학과	8672	M2 704
	보건행정학과	8672	
	임상병리학과	8674	I 402
	작업치료학과	8675	M2 704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8478	M1 601
	항공정비학과	8586	